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
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,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61호, 2025. 5. 27. 공포, 11. 28. 시행)됨에 따라, 농업·어업·임업 및 소금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생활안정지원 내용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및 시설 복구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1. 11. ~ 11. 18.) 중
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·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

바.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의 경영 안정 지원

제3조제1항제1호사목1)부터 6)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사람에”를 “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”로 하고, 같은 목1)부터 6)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목에 6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)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

별표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세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생계비는 가구의 생계를 담당

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·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지원한다.

별표 제1호마목의 그 밖의 세부기준란 (1) 중 “지원 중”을 “지원 또는 바목에 따른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 경영 안정 지원 중”으로 한다.

별표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바. 농업·어업 · 임업·소 금생산업 및 소상공인· 중소기업 경 영 안정 지 원	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산림청	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 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 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 이 확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 정한 금액	가) 국고 70% 나) 지방비 30%	경영 안정 지원 대상 및 지 원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 양수산부장관, 중소벤처기 업부장관, 산림청장과 협의 하여 정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표 제1호사목의 부담률란 및 그 밖의 세부기준란 중 “바목까지의”를 각각 “사목까지의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란 중 “주(主) 생계수단 확인, 생활안정지원”을 “생활안정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란 중 “주 생계수단 확인 및 용자”를 “용자”로 하며,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“주 생계수단 등을 확인하여”를 “피해 사실 확인 및 지급 대상을 확정된 후”로 하고, 같은 란 제2호 중 “채납처

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를 “강제징수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
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며,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“확
정(주 생계수단 확인 등)”을 “확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) ① 국가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.	제3조(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생활안정지원: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(이하 “재난피해자”라 한다)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</u>	나. <u>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·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가구의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</u>
1) <u>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·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</u>	
2) <u>농업·어업·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</u>	
다. ~ 마. (생 략)	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

<u>바.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</u> 사. 농업·어업·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사용되는 사유 시설에 피해를 입은 <u>사람</u>에 대한 다음의 지원. 다만,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 중에서 농업·어업·임업 및 소금생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 1) ~ 5) (생략) <u><신 설></u> 2.·3. (생략) ② (생략)	<u>바. 농업·어업·임업·소금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의 경영 안정 지원</u> 사.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과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----- <u><단서 삭제></u> 1) ~ 5) (현행과 같음) 6) <u>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5319